

건설 · 중소기업 관련 분야별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며, 건축 · 설비 · 환경 · 에너지 등의 업체가 참여해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선도지역 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정부 예산 243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이 금지되며 지급보증금 미지급 문제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 개편을 게재한다[편집자주]

국토 · 환경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 실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 · 광역시 등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토록 함

■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 설계비와 시공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 추진.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 성능 20% 이상을 향상시켜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임

사업자 접수는 오는 1월 17일까지 진행하며, 그린리모델링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

■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존 도시정책의 방향을 도시 외곽 중심에서 기성 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종합 지원할 계획(올해 예산 243억원).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재생 두가지 형태로 구분해 추진하며, 노후도가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8곳을 지정해 시범사업 개시. 도시재생 사업에 '한국형 금융지원모델' 을 개발

하여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정거래 · 조달

■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 사업자 권리 제고

하도급법 개정으로 2월부터 수급사업자는 부당특약 및 지급보증금 미지급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됨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삭제 · 수정 등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
-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보증기관은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의 지급불능상태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30일 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

■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또는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 함

또한 계약이행보중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 도입

고용 · 노동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8,890원(5,210원×209

시간)이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산업 · 특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본격 시행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유턴기업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정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보조금, 인력,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

세제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세액감면 확대

○ 적용기한: 2016.12.31.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 · 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적용기한: 2015.12.31.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 ·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 · 중견기업'으로 확대